

2022년 인천의료원지부 부속 요구 합의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는 2022년 부속 요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의료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2023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

2. 단체협약서 제50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통상임금 : 기본급,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출납수당, 전산수당,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봉급조정수당, 직급대우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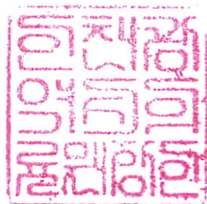
- 봉급조정수당 적용은 전년도 지급액으로 한다.

- 적용시기는 2023년 01월 01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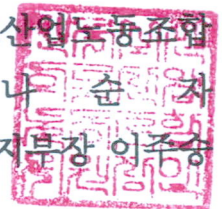
2023. 02. 27.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조승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차
를 대리하여 지부장 이주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지부장 이주승

